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3
----------	--------

제안일자 : 2015. 06. 2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비용분담주체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입주민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
-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
-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각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과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를 “5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 체계 및 재정확보 방안”을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

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후단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여 안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안 제12조 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안 제11조로 한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안 제17조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여 안 제16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u>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u>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u>지원 체계 및 재정확보 방안</u>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u>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u></p>	<p>제4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u>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u>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u>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u>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u>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u>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u></p>

제 정 안	수 정 안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제6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u></p> <p><u>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u> 2. <u>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u> 3. <u>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u> 4. <u>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u> 	<p><u>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④ <u>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u></p> <p>〈삭 제〉</p> <p><u>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u> 2. <u>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u> <p>〈삭 제〉</p> <p>〈삭 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8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u>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제9조(경제역량 강화)</u> (생략)</p> <p><u>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u>(생략)</p> <p><u>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u> (생략)</p> <p><u>제12조(문화·체육활동 지원)</u>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u>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3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u> (생략)</p> <p><u>제14조(사업주체와의 협력)</u> (생략)</p> <p><u>제15조(민간자원의 활용)</u> (생략)</p> <p><u>제16조(업무의 위탁)</u> (생략)</p> <p><u>제1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u>① (생략)</p>	<p>3. (제정안과 같음)</p> <p><u>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u> ---- ----- ---<삭제>-----.</p> <p>1~2. (제정안과 같음)</p> <p><u>제8조(경제역량 강화)</u> (제정안과 같음)</p> <p><u>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u> (제정안과 같음)</p> <p><u>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u> (제정안과 같음)</p> <p><u>제11조(문화·체육활동 지원)</u>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u>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u>(제정안과 같음)</p> <p><u>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u>(제정안과 같음)</p> <p><u>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u> (제정안과 같음)</p> <p><u>제15조(업무의 위탁)</u> (제정안과 같음)</p> <p><u>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u>①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행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생략)</p>	<p>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7조(시행규칙)(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

제8조(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1조(문화·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